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4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4월 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창산양삼특구 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 · 설치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규격, 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3. 25.
- 회부일자 : 2025. 4. 1.
- 상정일자 : 2024. 4. 7.

2. 제안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창산양삼특구 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 · 설치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규격, 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 명시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서 특화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특구지역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평창산양삼특구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광고물의 특례) 제1항에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였음.

1) 평창산양삼특구: 2014. 9. 25. 최초 지정 후 현재까지 연장하여 운영중.(중소기업청 고시 2014-54호(2014.10.17.)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 ⑩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

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차. (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지정 개요

- 최초 지정일 : 2014. 9. 25. (중소기업청 고시 2014-54호(2014.10.17.))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 평창군수 / 2015 ~ 2027
- 지정사유
 - 평창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일원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
- 면적 : 4,282,476m²
- 특화산업
 - 산양삼특구 기반조성사업
 -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사업
 - 산양삼 HAPPY700 마케팅사업
 - 2014년 9월 특구지정 이후 산양삼재배지의 양적 확대 및 저변확대로 산양삼을 활용한 특화 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평창군은 산림면적의 83%가 산림이며 고도 400 ~ 700m의 고지대로써 유기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좋아 산양삼 재배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재 조성중인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화산업 추진예정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년월일 : 2025. 3. 2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률」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창산양삼특구 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규격, 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5. 1. 22. ~ 2025. 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8호, 산림과-1325(2025. 1. 20.)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9811(2024. 12. 16.)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9811(2024. 12. 16.)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기획예산과-20377(2024. 12. 17.)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3426(2025. 2. 27.)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300(2025. 3. 17.)호]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표시하거나 설치”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

미터 이내로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 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4조 관련)

종류	수량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 이)	위 치	
			주 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1 (2)	○○ × ○ × ○○	○○군 ○○읍(면) ○○리 0000-00	기타도로 ○○m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광고물 등의 특례) ① 평창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 · 모양 · 크기 · 색깔 ·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신 설></p>	<p>제4조(광고물 등의 특례)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p> <p>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6조 및 「<u>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6조에도 불구하고</p>

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잣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2. <신 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
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신 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
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
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
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차. (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 13. 생략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 17.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성모
연락처	(033) 330 - 2450